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신·구조문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17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관할법원)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저축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저축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공정위 시정요청 사항 반영
	부칙 이 약관은 202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